

제68차 여성정책포럼

# 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미래

|일시| 2011. 4. 6(수) 14:00-16:50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본관 2층)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초대의 글

---

2011년 새봄을 맞이하여 UN Women(유엔여성)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동시에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유엔여성 출범 이후 한국여성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주요 아젠다를 소개하는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에 여성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여성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토론의 장에 널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 현



# 프로그램

---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 회 식 사 회 :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인사말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40~16:40	<b>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미래</b> 사 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 <b>발 표 1 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과제</b>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발 표 2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요 아젠다</b> : 교육·훈련·과학기술 분야의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토 론</b>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손애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이연숙 (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황현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2등서기관) <p style="text-align: right;">(가다다순)</p> <b>종합토론</b>
16:40~16:50	폐 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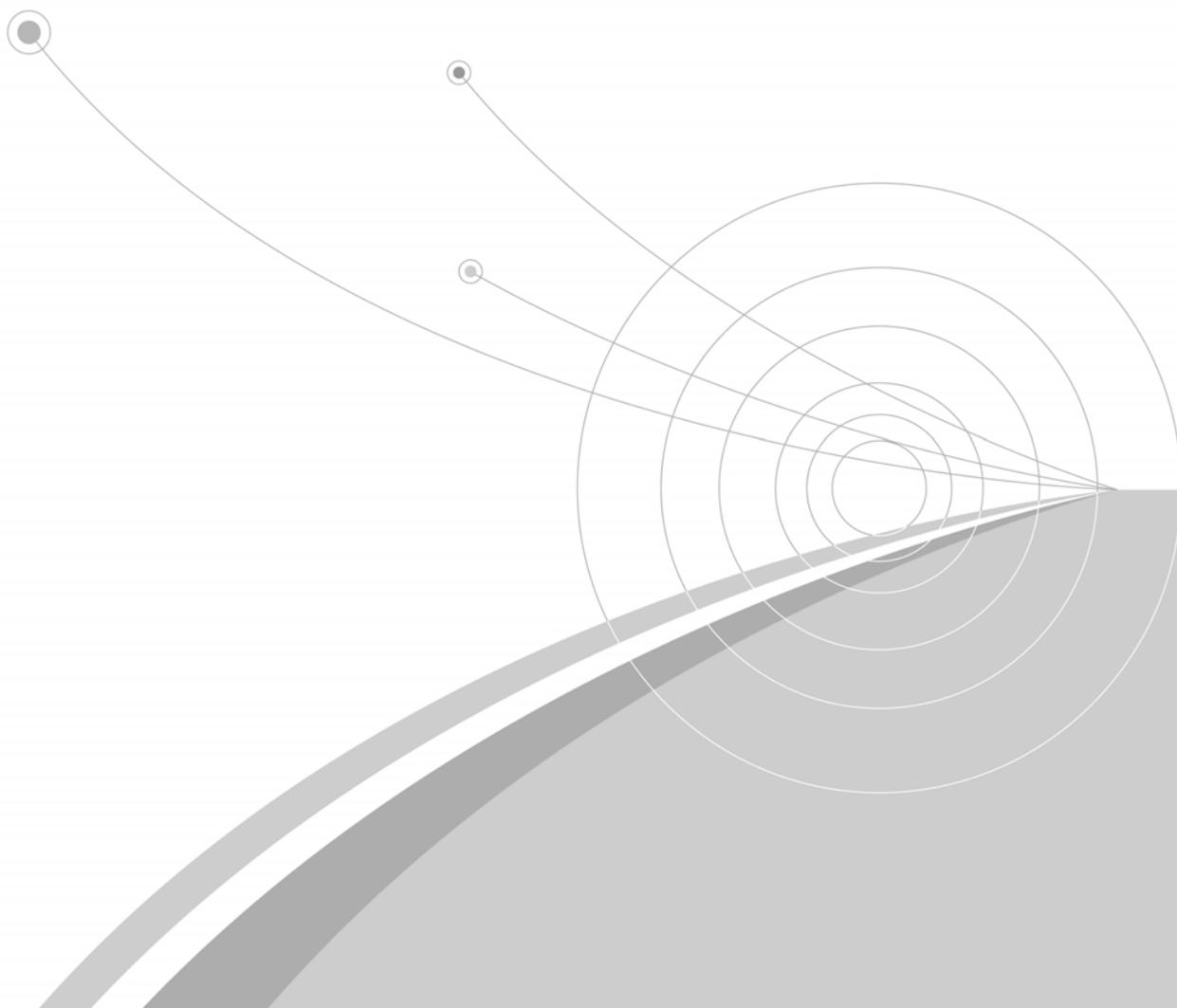
# 목 차

---

□ 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과제 .....	1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55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요 아젠다: 교육·훈련·과학기술 분야의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	17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문 .....	29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손애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이연숙 (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황현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2등서기관)	

# 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과제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개최기간(2011.2.22-3.4) 중인 2월 24일, UN WOMEN이 공식 출범하였다. UN WOMEN은 2010년 7월 설립되었으며, 칠레의 대통령을 역임한 미셸 바셀렛(Michelle Bachelet)이 현재 초대 총재이다. 매년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CSW의 회기 중에 UN WOMEN이 공식 출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 기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 기구의 중요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UN WOMEN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UN기구로(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유엔총회(UN Assembly: UA) 결의안 A/RES/64/289(2010년 7월)과 A/RES/63/311(2009년 10월)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UN WOMEN은 기존에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of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유엔사무총장 여성특별 보좌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to the Secretary General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OSAGI), 유엔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이 단일기구로 통합된 것이다.

유엔의 여성관련 기구의 통합은 2006년부터 유엔 시스템내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유엔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변화가 한국에게는 국제사회로의 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UN WOMEN의 거버넌스, 역할 및 기능, 비전 및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UN WOMEN의 거버넌스

UN WOMEN은 UN의 여러 여성관련 기관에 분산에 되어 있는 자원과 권한을 한 곳에 모아서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UN의 여성관련 기구로 DAW, INSTRAW, OSAGI, UNIFEM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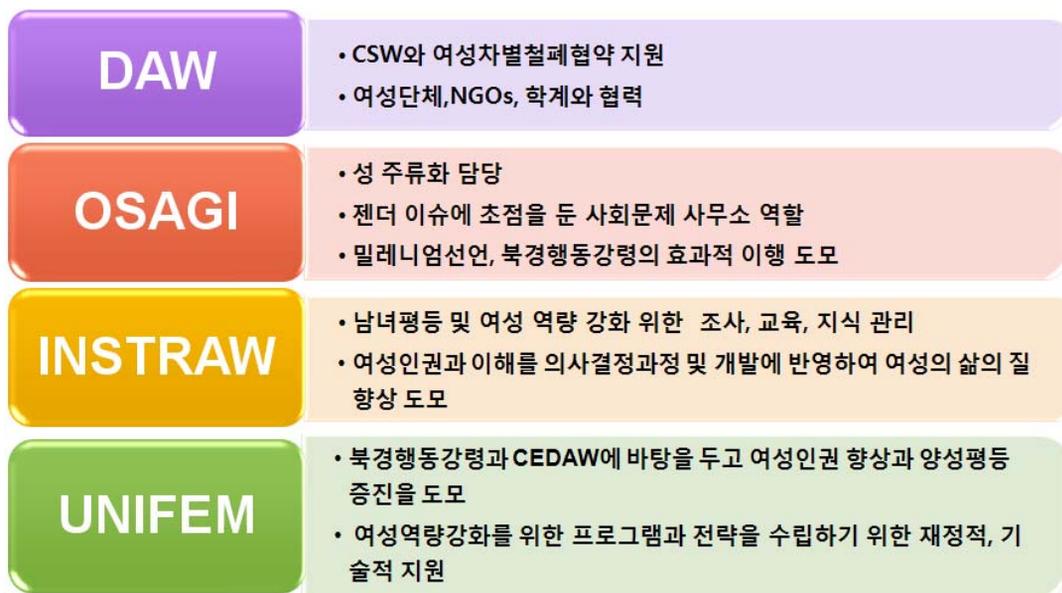
DAW은 CSW와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를 지원하였다. DAW 젠더이슈에 초점을 두는 여성단체 및 다른 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학계와 주로 관계를 맺으며 임무를 수행하였다.<sup>1)</sup>

OSAGI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UN시스템 안에서 성 주류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OSAGI의 자문위원은 UN의 여러 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급 직원들에게 성 주류에 대한

1) 출처: <http://www.un-ngls.org>, 2011.3.11 검색.

자문하고, 성 주류화를 위한 방법론, 도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sup>2)</sup> 주요 목표는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 1995년에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sup>3)</sup>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연구 및 훈련기관의 설립이 제시되었다.<sup>4)</sup> 그로 인해 1976년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sup>5)</sup>는 INSTRAW을 설립하였으며, 1983년 INSTRAW본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INSTRAW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을 성취하기 위해 조사, 교육 및 지식 관리를 담당하였다. 여성의 인권과 욕구 등이 의사결정과정 및 개발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 임무를 두었다.



〈그림 1〉 2010년까지의 여성관련 UN기구

2) 출처: <http://www.un.org/womenwatch/osagi/gendermainstreaming.htm>, 2010년 3. 26 검색.

3) 출처: <http://www.eldis.org/>, 2011.3.1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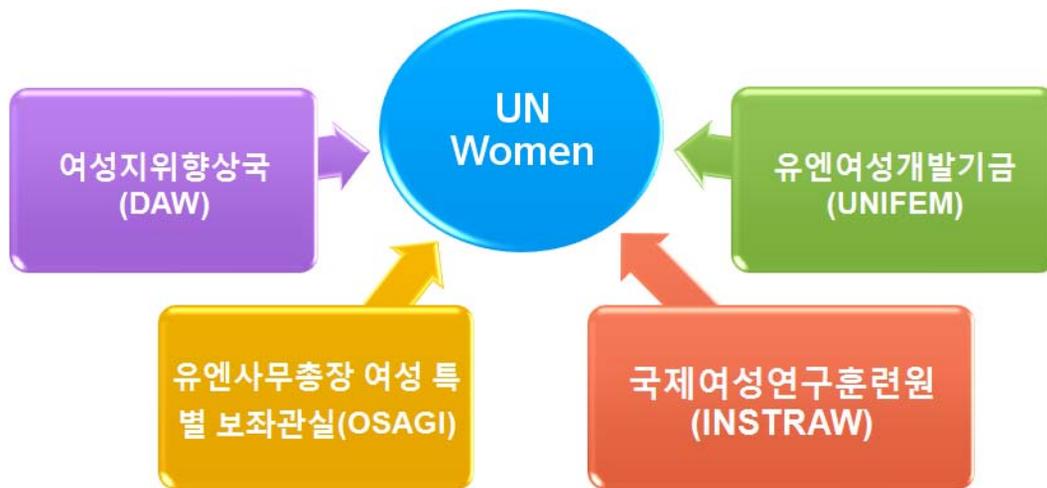
4) 출처: <http://www.unfoundation.org/donate/instraw.html>, 2011.3.11 검색.

5) 경제, 사회 및 14개의 UN 전문 기관(specialized agencies)과 기능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 5개의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ssions)와 연관된 업무를 조정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UN헌정 하에 설립된 기구이다. 11개의 UN기금과 프로그램은 ECOSOC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ECOSOC는 세계 경제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주도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주요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회의의 후속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돕는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권한과 함께 ECOSOC의 범위는 전체 UN시스템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70퍼센트에 달한다. ECOSOC는 이러한 이슈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주도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주요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회의의 후속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돕는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권한과 함께 ECOSOC의 범위는 전체 국제 연합 시스템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70퍼센트에 달한다.

출처: <http://www.un.org/en/aboutun/structure/index.shtml>, 2011.3.11 검색.

UNIFEM은 여성의 인권 향상과 양성평등을 성취하는데 헌신하였다.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UNIFEM은 모든 여성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염려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기본적 권리라는 전제와 양성평등은 국가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전제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6년 설립 이래로 UNIFEM은 전 세계 여성과 여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뤘다. 여성단체와 정부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및 국제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고 변화의 가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성단체 및 정부와 UN시스템을 연계하였다. UNIFEM의 뼈대가 되는 두 가지 국제협약은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었다. 이 두 협약의 정신은 빈곤, 기아, 질병, 문맹, 성불평등을 없애고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도 천명되었다.

UN시스템 안에 이렇게 여러 기구들이 있다 보니, 이 중 어느 기구도 양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유엔의 여러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받기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 이슈와 관련한 자원 역시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하였다.<sup>6)</sup>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여성과 여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단일화된 유엔기구로 UN WOMEN이 탄생한 것이다.



〈그림 2〉 UN 여성관련 기구의 통합

UN WOMEN은 2010년도의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289에 따라서 유엔총회, ECOSOC 과 CSW으로 구성된 다층적 거버넌스(multi-tiered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structure)에 의해 관리된다. 이들 정부간 기구들은 UN WOMEN의 운영을 위한 정책 지도(policy guidance)를 한다. UN WOMEN은 41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다(A/RES/64/289). 이 집행위원

6) 출처: <http://www.unwomen.org/about-us/about-un-women/>, 2011.3.8검색.

회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지역에서 10개국, 아시아지역에서 10개국, 동유럽에서 4개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라비안해 지역에서 6개국, 서유럽 및 기타지역에서 5개국, UN WOMEN에 기여도가 높은 6개국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 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다. 그리고 기여정도가 높은 6개국은 UN WOMEN에 기여금을 많이 제공한 10개 국가 중 위에서부터 4개국을 정하며, 나머지 2개국은 OECD/DAC의 회원국이 아니면서 UN WOMEN에 기여금을 많이 제공한 개발도상국들 중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0년 11월 개최된 ECOSOC 회의에서는 UN WOMEN의 집행위원국들을 선출하였다.<sup>7)</sup> 선출된 집행위원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UN WOMEN의 집행위원회 구성<sup>8)</sup>

번호	지역	국가	국가 수
1	아프리카	앙고라, 케이프베르디(Cape Verde), 콩고, 코테 디보아르, 콩고민주공화국(DRC), 이디오피아, 레소토, 리비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10
2	아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한국, 동티모르	10
3	동유럽	에스토니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4
4	라틴아메리카 및 카라비안 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페루	6
5	서유럽 및 기타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스웨덴	5
6	기여국	멕시코,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영국, 미국	6
총계		41	

41개의 국가 중 지역적 안배에 따라 선출된 국가들은 2-3년의 집행위원회활동을 한다. 집행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직은 아프리카지역의 나이지리아가 맡고 있고 있다. 나머지 4개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한 국가들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 동유럽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라틴아메리카 및 카라비안지역에서는 페루, 서유럽 및 기타지역에서는 스웨덴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UN WOMEN의 예산은 연간 최소한 5억불(\$ 500 million)은 될 것으로 보여 과거 4개 여성관련 UN기구의 예산을 합산한 것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7) 출처: <http://www.unwomen.org/2010/11/united-nations-elects-executive-board-of-new-agency-for-womens-empowerment/>, 2011.3.10 검색.

8) 출처: <http://www.unwomen.org/about-us/governance/executive-board/>, 2011.3.10 검색.

## 2. UN WOMEN의 주요 역할 및 주요 기능<sup>9)</sup>

UN WOMEN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 합의한 양성평등 기준들을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을 지원하고, 회원국들이 이런 기준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인간개발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도록 UN 시스템 안에 있는 기구들을 지원한다. UN WOMEN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가. 프로그램 및 기술지원

UN WOMEN은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에 한해서 정부와 NGOs와 함께 양성평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 법,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한다. 국가의 기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 가장 적합할지, 어떠한 방법이 여성관련 국가 및 국제적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급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활동한다.

### 나. 기금 조성(Grant-making Funds)

UN WOMEN은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그룹이 수행할 획기적이며 고성과 프로그램을 위해 양성평등기금(Fund for Gender Equality)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UN신탁기금(UN Trust Fund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을 제공한다. 특히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지역 및 국가차원의 정치참여를 늘리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에 쓰여 진다. UN을 대신해 UN WOMEN에 의해 관리되는 UN신탁기금(UN Trust Fund)은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을 근절시키는데 쓰인다.

### 다.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CSW은 정책결정기관으로 ECOSOC의 기능위원회 중 하나다. 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매년 회원국의 대표자는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양성평등의 진척상황에 대한 평가와 제약점을 밝혀내고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국제적 기준을 정한다.

### 라. 기타 정부간 절차 과정 처리(Intergovernmental Processes)

CSW를 이외에 UN WOMEN은 유엔 총회, ECOSOC 및 UN안전보장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UN WOMEN은 UN 사무총장의 여

9) 출처: <http://www.unwomen.org/how-we-work/>, 2011.3.27 검색.

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UN 회원국과 UN기구들의 조치들로 구성된다.<sup>10)</sup> UN WOMEN은 또한 국제이주와 기후변화와 같은 특정 개발 이슈에 관한 정부 간 협상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책무가 증진토록 지원한다.

### 마. 역량개발과 훈련

UN WOMEN은 정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기구 내 전문가를 다른 유엔 기구들과 공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의 인권 옹호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국가정책, 프로그램, 예산에 젠더를 연계하고, 국가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 WOMEN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분쟁에서 벗어난 취약국가(fragile states)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바. 전문가 그룹 회의(Expert Group Meetings)

전문가집단 회의는, UN WOMEN이 매년 개최되는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를 정하는데 조언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전문가집단은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를 찾아내어, 정책 제언을 한다. 학계, 정부, 시민사회 및 UN 혹은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 사. UN시스템과의 협조

UN WOMEN은 여성인권과 기회의 실현을 위해 UN시스템의 모든 노력에 협조한다. 즉, 다른 UN기구의 프로그램에 양성평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UN시스템이 여성에 대해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 UN 여성·양성평등 범기구 네트워크(UN Inter-Agency Network on Women and Gender Equality)의 의장으로서 UN WOMEN은 UN시스템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25개의 UN기구와 공동의 노력을 한다.

---

10)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8년 여성폭력철폐캠페인 UNiTE를 시작하였다. 각정부, 시민사회, 여성단체, 대중매체와 UN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UNiTE 캠페인은 MDGs의 달성 시기인 2015년까지 아래 다섯 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각 정부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내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둘째 여러 섹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셋째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관련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넷째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sup>1)</sup>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9년 유엔총회의 요구에 따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웹사이트인 'The UN Secretary-General's database on violence against women'을 구축하였다.

### 3. UN WOMEN의 비전과 우선 주제

2011년 1월 24일-26일 UN WOMEN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셸 바셀렛 총재는 UN WOMEN의 비전과 함께, UN WOMEN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주제들에 대하여 연설하였다.<sup>11)</sup> 이 연설내용은 앞으로 UN WOMEN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어 한국여성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UN WOMEN의 비전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와 역량을 가지며 개발, 평화, 안보 아젠다에 양성평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기구의 주요 목표는 회원국들이 성 인지적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성공적 전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림 3〉 UN WOMEN의 비전과 목표

UN WOMEN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5가지 주요 원칙에 따라 일할 것을 밝혔다.

- 회원국들이 국제협약과 기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제공
- 양성평등에 관한 국제 규범, 정책 구조 강화를 위한 정부간 절차 지원
-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지지와 여성/소녀들의 권리 옹호 (특히, 소외계층 여성)
- 양성평등에 관한 유엔 시스템 업무의 일관성 향상
- 지식, 경험, 실제 사례와 규범적 지도(guidance)를 연계하는 국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

11) 출처: [http://www.unwomen.org/wp-content/uploads/2011/01/VisionAnd100DayActionPlan\\_en.pdf](http://www.unwomen.org/wp-content/uploads/2011/01/VisionAnd100DayActionPlan_en.pdf). 2011.3.10 검색.

UN WOMEN은 이 뿐만 아니라 우선시 다루어야 할 5개의 주제(thematic priorities)를 정하고, 앞으로 이들 주제에 중점을 두고 일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5개의 우선 주제는 아래와 같다.

#### ○ 여성의 발언권·리더십·참여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참여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리더십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혜택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력

#### ○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회원국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를 늘리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책, 서비스체계를 구축토록 함. 이를 위하여 UNICEF, UNFPA(UN Population Fund), WHO와 협력할 것임

#### ○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이행 강화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전면적 참여, 성 인지적 조기경보,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유엔 결의안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함.

####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전 세계적인 경제/환경 위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여성의 경제적 안정과 권리, 생산적 자산(asset) 확보,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각국 정부 및 UNDP, ILO, World Bank, 기타 지역의 개발은행들과 협력

#### ○ 국가, 지방, 분야별 계획, 예산, 통계에 양성평등을 우선적으로 반영

UN Country Team(UNCT)<sup>12)</sup>을 비롯한 기타 UN협력기관들과 함께 근거에 기초한 계획, 예산, 통계 시스템을 성 인지적으로 수립 및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회원국의 여성차별철폐 협약 보고서 작성과 함께,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배양토록 지원

UN WOMEN은 이 외에도 HIV/AIDS, 이주, 법규, 환경악화와 기후변화, 사회보장, 임산부와 아동의 보건 문제도 다룰 것이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UN WOMEN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12) UNCT는 현재 136개국에 존재하며, 회원국의 개발, 위기, 국가재건 등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UN 시스템에 속한 모든 기구들을 포함한다.

서 UN 시스템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UN WOMEN은 앞으로 UN 개발 그룹(UN Development Group: UNDГ)<sup>13)</sup>과 함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system-wide coordination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 전략의 수립을 하는 것은 기존 기구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과 우선권을 유지토록 하면서 일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UN WOMEN은 UN의 다른 기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5개의 우선 주제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이행 강화’이다. 이는 다른 4개의 주제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인 것에 반해,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이행 강화’는 특정지역의 국가들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UN WOMEN의 우선 주제로 선정된 것에는, 분쟁지역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빈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UN WOMEN만 아니라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분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MDGs 달성 정도는 개발도상국가들 보다는 낮다. 그 예로, 분쟁지역 및 취약국가들은 평균적으로 54%에 달하는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sup>14)</sup> 이에, G7+는 2010년 MDGs 10주년 이행 점검회의에서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해서는 분쟁지역 및 취약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원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였다.<sup>15)</sup> 따라서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도 MDGs 달성 위주로 제공될 것이다.

게다가 2010년 10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2000) 채택 10주년을 기념하였다. 분쟁지역에서 성폭력 및 강간이 만연해지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 (2000)를 채택하였다.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 지난 10년간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820(2008), 1888 및 1889 (2009), 1960(2010)이 채택되었다.

13) UNDГ는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32개의 유엔기금, 프로그램, 기관, 부서 등을 하나로 묶은 그룹이다. 이 그룹의 주요 목표는 MDGs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일관성 있고, 효과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14) Statement of the g7+ Heads of State, September 20, 2010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DG Summit, New York City, 자료: <http://www.oecd.org/dataoecd/2/47/4610863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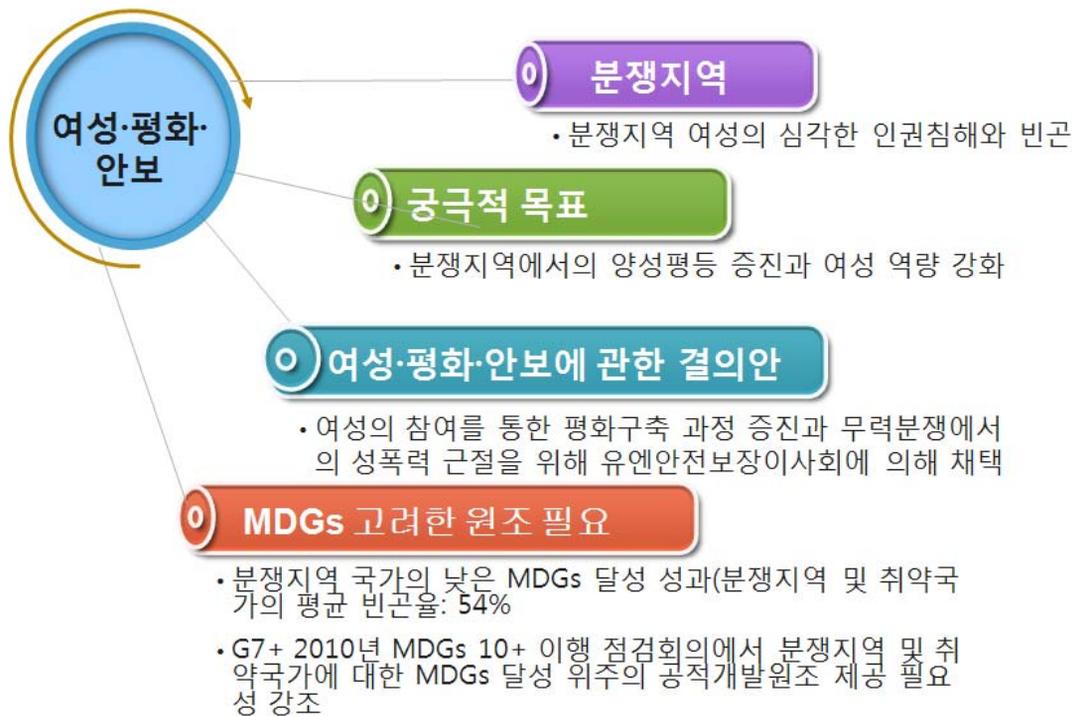
15) Statement of the g7+ Heads of State, September 20, 2010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DG Summit, New York City, <http://www.oecd.org/dataoecd/2/47/46108633.pdf>. 2011. 1. 10 검색.

〈표 2〉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주요 내용
결의안 1325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도모</li> <li>-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여아의 보호</li> <li>- 여성의 권리증진과 실제적 법 적용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li> <li>- 평화유지활동의 성 주류화</li> </ul>
결의안 1820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에게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li> <li>-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면죄를 허용하지 않을 것과 민간인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li> <li>- UN과 평화유지활동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것</li> </ul>
결의안 1888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무총장 특별대리인을 임명하여 분쟁지역의 성폭력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조정할 것</li> <li>- 분쟁지역에 성폭력 전문가를 파견할 것</li> <li>- 성폭력 이슈를 평화협상과정에서 다룰 것</li> <li>- 분쟁의 성격과 가해자에 대해 모니터링과 보고할 것</li> </ul>
결의안 1889(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 1325의 이행정도를 측정할 지표를 제출할 것</li> <li>- 분쟁지역과 분쟁이 종결된 지역 여성과 여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대응 방안을 강화할 것</li> </ul>
결의안 1960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평화·안보아젠다와 관련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범하거나 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명단을 작성할 것</li> <li>- 유엔사무총장 특별대리인은 관련제재위원회(sanction committees)에 보고하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li> <li>- 분쟁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보고, 분석, 보고체계를 수립할 것</li> </ul>

분쟁지역 또는 취약국가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분쟁지역에서는 오랜 갈등과 내전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개발도상국 여성과 여아의 상황보다 취약하다. OECD/DAC에 의하면 DAC 회원국들의 ‘분쟁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총 원조규모 중 20%만이 양성평등 증진을 위하여 활용되었다.<sup>16)</sup> 이런 상황에서 UN WOMEN은 여성·평화·안보 아젠다를 이행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6) OECD(2010),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http://www.oecd.org/dataoecd/58/9/46206455.pdf>, 2011. 1. 10 검색.



〈그림 4〉 분쟁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증진

#### 4. 한국여성정책의 과제

여성과 관련한 UN의 기구의 변화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여성정책이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는 한국여성정책이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그 장을 넓혀가야 함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한국여성정책의 향후 과제를 국제협력분야에 초점을 두어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은 2009년 말 OECD/DAC의 가입으로 명실상부하게 선진 공여국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ODA의 기여율도 확대하여 2015년까지 ODA/GNI를 0.25%로 증가할 계획이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 해 11월 UN WOMEN의 집행위원국으로 선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여금 또한 2011년 한 해 470만 불 정도 제공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향후 제4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2008-2012)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진 국제협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ODA와 관련해서는 OECD/DAC의 원칙과 더불어 앞에서 살펴 본 UN WOMEN의 우선 주제들에 맞추어 ODA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DAC의 Gendernet이 다루는

주제들도 사실 UN WOMEN의 우선 주제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UN WOMEN이 다루고자 하는 우선 주제를 중심으로 ODA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국제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MDGs와 같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목표(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ADGs)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ODA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개발도상국의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분쟁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최근 국제상황에서 이 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OECD/DAC 고위급회의에서 분쟁지역의 여성과 여아 이슈가 의제화되도록, 이 이슈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는 특히 MDGs 달성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젠더와 개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의제로 제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부처와 국내 여성단체, 국제 여성단체, 연구 및 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 이 같은 네트워크의 강화는 국제협력분야의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는 반기문사무총장의 UNiTE 캠페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ODA 지원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별파트너십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별파트너십전략 수립 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면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수원국의 환경과 요구에 맞추어 경제개발의 경험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의 이런 경험도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UN WOMEN은 국가, 지방, 분야별 계획, 예산, 통계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을 지난 5년간 제도화하면서 축적했던 경험, 여성친화도시 개발 등의 양성평등 정책 실행모델을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하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sup>18)</sup>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0년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연수생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2011년 연수과정에서 부터 이 교재를 활용한다. 이 교재에는 한국여성정책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들을 담겨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정책사례를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국별파트너십전략을 통해 수원국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17) 이선주, 변화순, 김경희(2010),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와 양성평등증진과의 연계성 연구」,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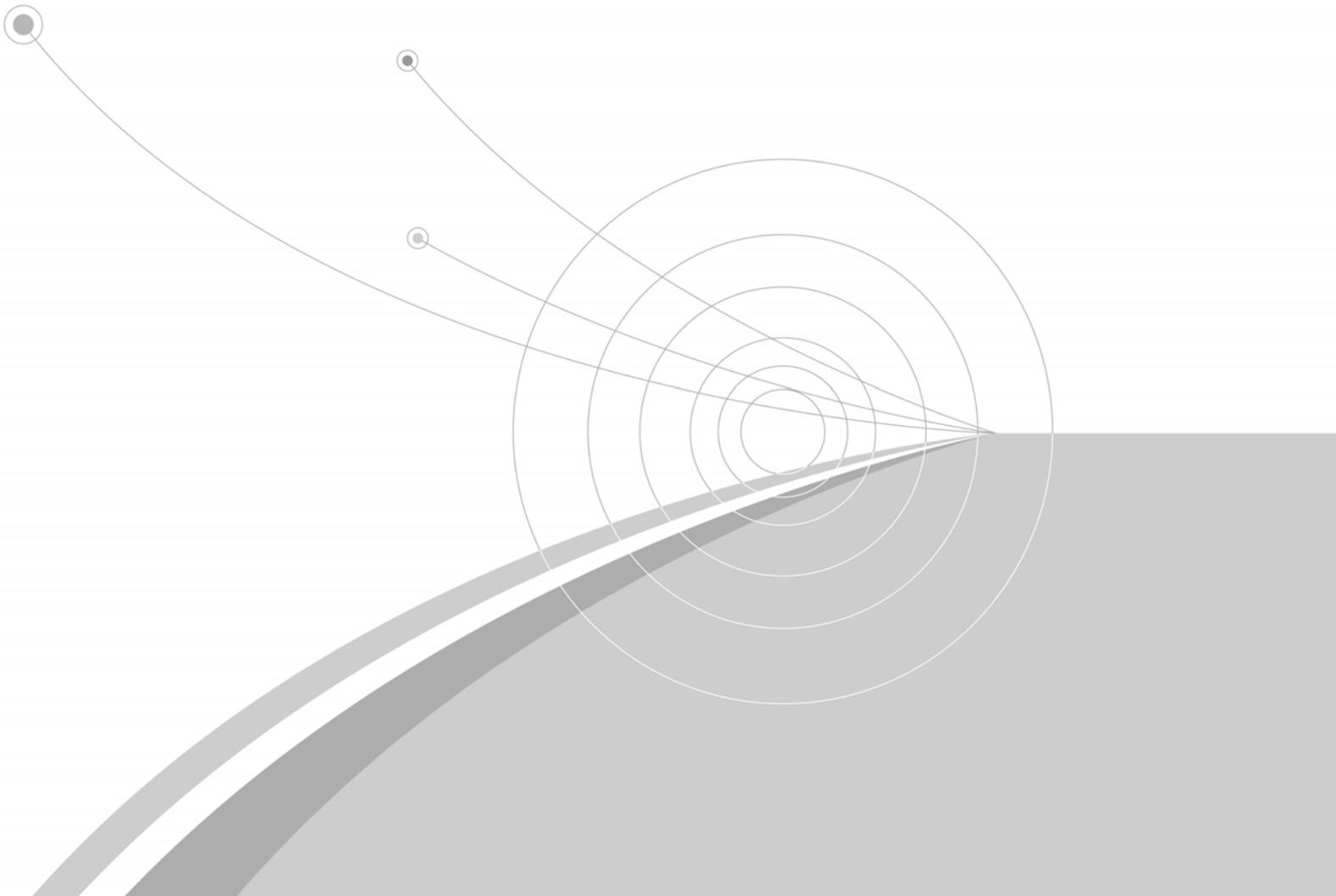
18) Ibid.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의 양성 문제이다.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이 잦아지면서 국제젠더전문가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젠더와 개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아직까지 축적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준비된 인적 자원이 필요한 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인력 양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 교육계, 여성단체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제55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요 아젠다:  
교육·훈련·과학기술 분야의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들어가는 말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의 권한 강화(women's empowerment)의 아젠다인 '북경행동강령'은 제 3차 세계여성대회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미래전략'(Nairobi Forward-looking)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사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꾸어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정의 실현하여 평등, 발전, 평화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이 강령은 양성평등을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다(이선주 외, 2010). UN 여성지위위원회 '북경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확인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제 5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conference도 북경행동강령에 대한 각국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제 도출을 위해 2011.2.22(화)부터 3.4(금)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 5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UN Women이 새롭게 출발한 시점이어서 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었는데, 2011년에 채택된 의제는 '여성과 여아의 교육·훈련·과학기술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완전고용·양질의 노동으로의 이행'(Access and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to education, training,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for the promotion of women's equal access to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이었다. 회의에서는 여성교육 증진을 통한 여성의 세력화 그리고 교육향상에 따른 고용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성불평등한 고용기회의 해소가 MDGs를 향한 주요 필수요건임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북경행동강령과 연계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내용을 각국의 대표들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많은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향후 각국의 행동강령 이행 의지를 밝혔다.

주요 패널의 의제는 총 5개로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 '여성의 교육·고용 분야 접근 및 참여', '여아 차별 및 폭력 철폐 합의결론 이행성과 평가',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 '모성사망에 대한 근절'로 각국의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의 담당자들이 향후 미래 국제사회의 역할과 개발도상국가,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원조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제 55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하고 회의결과가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 □ 제 55차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 개회식 연설의 의제관련 주요 논점

개회식의 주요 연설에서 Ms. Asha-Rose Migiro(United Nations Deputy Secretary-General) 은

UN Women의 설립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강화를 위해 중요한 진전이며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 Summit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강화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다른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해야 하며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인 개발, 인권,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였다. 즉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MDGs를 달성하는데 주요 과제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할 수 있다. Ambassador Lazarous Kapambwe(Presid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은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여아에 대한 교육, 특히 초등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수의 여아들이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음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해야 함을 주장했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NGO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주장했다.

한편 UN Women의 초대 의장인 Ms. Michelle Bachelet(Under-Secretary-General and Executive Director UN Women)은 자신의 연설에서 본인이 UN Women의 첫 번째 Under-Secretary-General 과 Executive Director로 임명된 것에 대해 영광임을 나타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영역의 UN Women의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강화,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결, 셋째, 평화·안보 아젠다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 넷째, 여성의 경제력 증진, 다섯째, 양성평등과 관련한 국가정책에서 국가 및 지역 예산의 주요 우선순위 적용 등을 향후 UN Women이 수행해야할 주요의제의 내용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일반토의에서는 UN의 참여국가들 중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사례에 대해서 각국의 대표단이 자유롭게 발표·토론하였다. 한국대표로는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2011년에 한국정부가 UN Women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재정기여 부분에서 현재보다 100배 이상 수준인 약 47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공표했다. 또한 한국에서 교육 수혜 정도의 남녀 간 격차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부분을 강조하고 여성들이 비전통분야인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과학자 채용비율을 개선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럽대표인 Mr. Miklos Rethelyi(헝가리 국가자원부 장관)은 유럽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노동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남녀 분리현상이 나타나 남녀 간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EU는 2020년 유럽 전략을 통해 여성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모두 75%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G77+중국 그룹 대표인 Mr. Jorge Arguello(아르헨티나 유엔대표부)는 북경 행동 강령 이후에도 여성들은 가난, 문맹, 학업중단,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G77과 중국은 세계 경제·재정 위기, 식량불안,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등 여성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경 행동강령의 이행과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대표, Doreen Siyoka(나미비아 양성평등 및 아동 복지부 장관)는 과학, 기술과 혁신이 MDG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인 개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ADC가 가난, 식량부족, 사회기반시설 및 인적자원 부족 등을 극복하고 여성과 여아의 교육, 훈련, 과학과 기술에의 접근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부채탕감, 개발원조 등 지원을 요청했다.

ASEAN 대표부, Hasan Klieb(주유엔인도네시아 영사)는 공적사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2015년까지 아세안 국가 내 문맹률 퇴치와 모든 기초교육 수혜, 모든 수준의 정책에 젠더관점을 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전 세계 각 대륙 대표들 연설의 공통적인 내용은 여성과 여아가 과학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등의 문명이 잘 발달되지 않은 대륙의 경우, 여성들이 폭력,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기기 활용, 과학기술분야 학문 등에 접근 조차 할 수 없는 경우, 양성평등 사회 실현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여성들이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NGO, 각국의 국가정책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 각 패널토의 별 의제관련 주요 논의

### ○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

패널토의는 국제기구 전문가, 각국의 의제관련 전문가, 그리고 해당 사례의 경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의제와 관련해서 패널리스트들은 각국이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특히 여성들이 과학기술축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과학기술 진출 확대를 위한 role model의 중요성과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채용목표제의 채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패널리스트인 벵커 로이(인도 Barefoot College 설립 및 소장)는 2005년 이후 Women Barefoot Solar Engineer of Africa 사업은 최빈국 21개국의 전력선이 닿지 않는 농촌지역의 생활을 개선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솔라에너지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농촌지역의 삶과 생활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사례는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이용하기 힘든 개발도상국들 여성들에게 과학기술을 이용

한 생활의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고단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삶의 변화와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패널리스트인 론다 쉬빙거 스탠포드대 교수는 과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기여를 통해 양성평등을 가속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접근과 활용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분야, 교육과 훈련은 여성의 권한을 증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외에 시새 무차에 보츠와나대 교수, 하키프 메서 텔아비브대 교수, 앤 미루 UNCTAD 기술수송과장 등은 학교교육에서 여성이 수학, 과학 등에서 학교단계가 높아질 수록 남학생에 비해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스테레오타입의 교육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교육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PISA의 한국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도, 학교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수학, 과학 분야에서의 남녀 격차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해당 분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전 세계가 협력체계하에서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 ○ 여성의 교육·고용분야 접근 및 참여

패널리스트들은 여성의 교육수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노동 시장 진출은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토의내용으로 삼았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인 Ms. Diana Serafini(파라과이 교육 아동부 교육관리차관)은 파라과이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문맹률을 낮추고, 교사가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Ms. Subhangi Herath(스리랑카 콜롬보대학 교수)는 가난, 건강, 조혼과 임신,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로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IT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의사소통 능력(영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정보를 여성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Ms. Ilze Trapenciere(라트비아 교육과학노조 자문위원)은 직업교육(VET;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은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Ms. S. Gülser Corat(UNESCO 양성평등위원회)은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그 결과 남아보다 여아가 교육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가 들의 현실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어려운 지역일수록 여아 교육(특히 과학기술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 여아 차별 및 폭력 철폐 합의결론 이행성과 평가

여아폭력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여 사회의 안전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패널리스트들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Saad Houry(UNICEF Deputy Executive Director)는 여성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통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성과 소년들의 폭력이 감소하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도록 하는 실천과제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패널리스트들(Ika, 19세 인도네시아 자바; Ya Marie, 18세, 시에라이온)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여아들이 가정에서 매춘으로 내몰리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며 여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공고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빈곤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합의했다.

## ○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녹색경제발전과 관련한 여성의 실천적 역할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지역사회 등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패널리스트들은 의견을 합의했다. 패널리스트들은 국가 간 재정 부담에서 있어서 국가 내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연계와 협력방안이 제안되어야 하며 방법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인 Ms. Henrietta Elizabeth Thompson(UN지속가능발전회의)은 녹색경제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양성평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과 내용을 각 국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사례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Ms. Monique Essed-Fernandes(여성환경단체:WEDO), Mr. Robert Freling(태양 전기기금의 Executive Director), Ms. Albina Ruiz Rios(Health Cities Group 대표: NGO)들은 실질적으로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문제 등 지역환경의 변화가 여성의 삶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솔라에너지 등 신기술을 여성들이 지역에서 습득·활용하도록 하여 총체적인 환경문제의 개선에 여성의 세력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합의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여성인권 강화에 중요한 기제임을 강조하였다.

### ○ 모성사망에 대한 근절

산모건강 및 여아(Girl)의 건강과 산모사망 및 신생아 사망률(maternal mortality)을 낮추기 위한 목표(MDG 5)달성의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각 개별국가의 정부 및 국제단체(WHO, World Bank 등)가 협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산모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편차의 문제와 산모사망에 있어서 폭력과 여성인권의 차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NGO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널리스트인 Dr. Babatunde Osotimehin(Executive Director, UNFPA)는 통계적으로 산모의 사망률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나, 남아프리카의 경우 한해 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있음을 강조하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정비와 실행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는 세계은행,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 단체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리스트인 Ms. Kyung-wha Kang(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의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이는 인간권리의 중요한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했다며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력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Mr. Christoph Benn(Director of External Relations and Partnerships, Global Fund to Fight AIDS, Malaria and Tuberculosis)는 현재 아프리카의 AIDS·HIV관련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함과 동시에 성폭력, 성차별 등이 여성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 있음에 대해 여성의 인권보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 ○ 결의안

제 55차 UN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제인 “Access and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in education, training,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for the promotion of women's equal access to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문 초안(drafted agreed conclusion)은 총 53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의 내용들은 CSW는 북경행동강령과 유엔총회 채택결의안, 북경행동강령+10, 북경행동강령+15에서 채택된 선언을 공고히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권리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여성과 여학생들의 완벽하고 동등한 접근과 참여를 위한 노력들도 강조되고 있다. 교육을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며 여성과 여학생들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반대하고 성평등을 추구한다.

11조에서는 재정, 경제, 식품, 에너지 분야의 위기와 빈곤,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가 여성과 여학생들의 권리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성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2조에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남성과 여성, 전체사회가 함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모성사망방지 등 모성보호와 여성의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사회가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조에서는 여성과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부족이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근로의 부족으로 연계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강화와 성별임금차이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17조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역할수행책임에 대한 차이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9조에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차원, 국제기구, 비정부조직, 학계, 전문가, 대중매체등에서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부행동강령은 정책과 프로그램의 강화, 교육의 접근과 참여 확대,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성인지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 강화, 교육에서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 지원,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여성의 유보와 점진적 전진,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학기술분야 창출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6.1 정책과 프로그램의 강화’에서는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정부의 모든 섹터들이 교육, 훈련, 과학기술, 학문연구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들과 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학계에서는 성인지적인 연구를 지원하도록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강화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비판하고,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강화한다. 25조에서는 구조적으로 모든 단계의 예산 정책 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6.2 교육의 접근과 참여 확대’에서는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무상의무초등교육을 포함하여 양질의 정규/비정규 교육과 모든 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권한부여를 위해 정보, 의사소통기술, 기업가 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 재교육, 인권교육, 원격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특히, 과학기술분야)을 통해 여성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28조에서는 여학생들의 학교 등록율과 유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모들과 지역사회 지원에 적정한 예산자원을 할당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임신한 청년학생과 어린 어머니들, 한부모 여성들이 교육을 계속 받아

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3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성인지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 강화’에서는 학습조건개선, 선생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수법 강의, 교과과정 발달 등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동등하게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5조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정해진 성역할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여학생들에게도 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도 여성 롤모델을 발굴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6.4 교육에서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 지원’에서는 여학생들의 학교교육에서 일자리의 이행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40조에서는 성인지적 직업상담, 재교육과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41조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별 임금 차이, 성별직업구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력개발지원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양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6.5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여성의 유보와 점진적 전진’에서는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하여 모든 공공, 사적인 분야에서 성인지적인 근로환경개선과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45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리더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승진 등에 있어 얼마나 성별균형이 맞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명확한 평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연결하고 여성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필요하다.

‘6.6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학기술분야 창출’에서는 기계, 수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교통, 농업, 영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권리강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잠재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여성의 요구를 인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좋은 사례를 함께 나누도록 한다. 53조에서는 여성들이 과학기술분야의 전통적인 지식과 혁신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존중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맺는 말

2011년 제 5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 UN Women의 설립을 축하하

고, 향후 UN Women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공동의 합의 아래 참여국가들은 양성평등과 여성지위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보장, 평화유지 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지속해야할 노력들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여성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해왔지만, 교육에서의 발전이 고용기회의 양성평등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인식, 부족한 접근기회,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유럽의 각국과 우리나라도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남녀의 직종분리에 있어서 불평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젠더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교사들도 젠더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합의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의하지 않아서 실생활에서도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 전 세계가 기술과 관련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여성들이 기계문명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한편, 일부국가에서는 조혼, 임신, 여성에 대한 폭력, 가난 등이 여성지위 향상과 과학기술 분야에의 여성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제3세계의 경우 보건·의료(Health Care System) 관련한 시스템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원조도 중요하지만 여성에 대한 성폭력, 조혼 때문에 여성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데 합의 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여성의 세력화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모성사망근절을 위해 조혼, 폭력 등의 사회문제 개선 및 여성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2011년 주요 의제인 ‘여성과 여아의 교육·훈련·과학기술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완전고용·양질의 노동으로의 이행’은 UN 참여국가의 현황과 향후 개별국가들, NGO, 국제기구의들의 양성평등과 성주류화를 위한 미래 의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여전히 제3세계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 등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며, 폭력과 차별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G20 국가의 하나가 된 우리나라는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으로 국내의 성평등 확산과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개발도상국가, 제3세계 여성의 인권보호 및 환경 변화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들을 개발,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완전이행과 관련해서 향후 한국여성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교육수혜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나라 국가보다도 우수하지만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09년 기

준, 여학생 82.4%, 남학생 81.6%)에 있어서 년에 남녀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09년도 기준으로 대졸여성의 취업률은 75.6%, 남성은 77.2%이나, 공학계열의 경우, 여학생 75.5%, 남학생, 78.1%이며 자연계열은 여학생 71.6%, 남학생 76.4%로 전체 평균에 비해 이공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령대가 30대 중·후반으로 진입하면 더 큰 남녀 간의 격차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연합의 경우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등의 국가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할당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교수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여 남녀의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한 기회의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생존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단계별 모니터링과 정책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 토 론 문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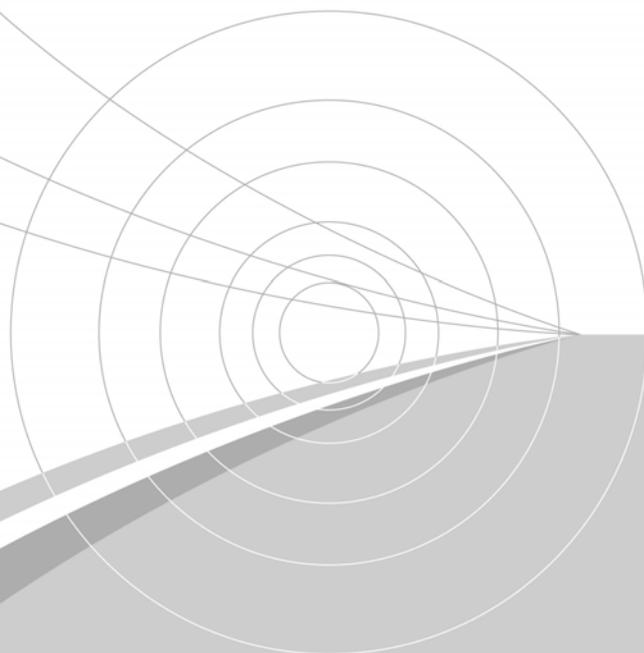
손애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이연숙 (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황현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2등서기관)



## UN Women의 출범을 환영하며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1. UN WOMEN 출범의 의미

지난 2월 제 5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기간중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있던 여성관련 유엔기구를 통합한 유엔우먼이 공식 출발하였다.

2008, 2009년의 세계경제위기를 비롯해 식량·기후위기, 분쟁 등은 유엔이 여성평등을 위해 마련한 정책, 글로벌 규범, 가이드라인 등과 그 집행사이에 갭을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평등은 후퇴하고 속도 역시 완화되었다. 때문에 그동안 유엔이 이루어온 성과에 대한 잠식과 후퇴를 보정하고 우선순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았다.

유엔우먼의 출범은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그 위상을 통해 각국의 정책에 여성과제가 우선순위(priority)가 되도록 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여성운동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우먼의 총재는 유엔 부총장의 지위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같은 위상은 유엔 정책결정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우선순위와 인력배치,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으로 UN WOMEN의 출범을 계기로 각 국가는 여성부분의 프라이어티를 달성할 책무가 주어지게 된다.

유엔 우먼의 출범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비전으로 개발, 평화, 안보, 아젠다에 양성평등의 원칙을 포함한 것이다.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10년 평가에서도 지적했듯 성평등은 개발과 안보, 평화달성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다.

### 2. UN WOMEN의 출범과 과제

UN WOMEN의 출범은 한국의 여성정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정부가 성평등 책무를 다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UN WOMEN의 출범으로 각국 정부는 정책에 여성과제가 우선순위(priority)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이미 여성의 지위가 상당부분 높아졌다는 생각에 여성정책이나 여성관련 의제에 비우호적, 소극적이며 여성정책기구인 여성부의 위상도 낮은 상태이다.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정책의 실질화를 요구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유엔 우먼 출범의 한국적 의미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된다. 2011년 한국정부는 유엔 우먼 출범을 지지하며 현재 규모보다 100배 이상의 재정지원을 공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볼 때 이같은 기여는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기여 못지않게 유엔우먼 출범을 진정하게 지지하는 일은 정부가 나서 여성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같은 책무의 주 담당은 여성부가 될 것이다. 여성부는 한국정부의 기초를 변화시키고 여성정책의 우선순위의 내용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슈의 위상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여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많다면 실제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여성정책에 대한 역차별논란의 맥락은 어떤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정책을 담보할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가능성과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유엔 여성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거버넌스이다. 민간과의 소통, 협력 없이는 유엔우먼의 정신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민간과의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NGO가 많다. 민간영역이 후퇴하면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를 마련한다 해도 실생활에서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엔우먼의 출범을 계기로 민과 관은 보다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에서도 유엔우먼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성운동과 연계시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의제에 성평등관점이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엔우먼 출범을 계기로 개발의제에서의 성통합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성이 행복한 국가가 잠재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특히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을 통해 모든 부문을 관통하는 핵심이슈로서 성평등(cross cutting issue)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등이 있지만 이 법의 목적이나 하위 목표에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다.<sup>1)</sup> 이에 작년 G 20 민간행사에서 여성단체연합 등은 개발부분에서의 성평등 의제가 거의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번 유엔우먼의 출범을 계기로 개발의제에서의 성평등 통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3. 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의 교육, 고용분야 접근 및 참여에 대한 의견

CSW는 올해 ‘여성과 여아의 교육, 훈련, 과학기술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양질의 노동으로의 이행’을 의제로 채택했다.

우리나라 여성교육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였다.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문제는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아직 어렵기만 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무시된채 여성의 교육수혜가 높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여성교육 분야는 여성차별이 없어진 대표적 예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보통 알파걸그룹으로 이야기되는 여성 법조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젊은 여성변호사의 수는 2009년 전체 변호사 수의 10%에 불과하다. 전체 판사 수에 비해 여성판사 수는 2009년에 22.8%이고 전체 검사 수에 비해 여성검사 수는 같은 해 15.6%이다. 상급 직급, 예컨대 부장판사·부장검사 급 및 그 이상의 직급에 이르면 여성 판·검사의 비율은 급감한다. 언론보도 등을 감안하면 여성법조인의 수는 생각보다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위직에 가면 이런 현상은 더한데 올 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22명중 여성이 단 한명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에서는 시정을 촉구하였다. 최근에 헌법재판관 한 명이 겨우 임명되어 이제 2명이 되었다.

여성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로펌 등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문이 좁은 공공영역 외에 시장영역에서의 여성 기피는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이다.

여성과 여아의 교육과 훈련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같은 교육성과가 일자리로,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하는 데는 아직 한국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여성 현실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알림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강선미, 개발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국제동향과 전망, 2010

## UN Women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미래

손애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제55차 여성지위위원회와 UN Women 공식 출범이 지난 지 불과 1달여만에 그 의미와 과제, 그리고 한국 여성정책에의 시사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말의 UN 본부는 여성의 물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월 22일 여성지위위원회 개회식에서 Ms. Bachelet UN Women 초대 총재는 UN Women의 비전과 5가지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어 24일 유엔 총회장에서 개최된 UN Women 공식 출범식에서는 “여권이 인권이다!! Women right is human right!”라는 구호가 유엔 건물을 가득 메웠고 남녀 모두 “We are UN Women!”이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벽찬 감동과 함께 이러한 역사적 현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과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한 바 있는데, 관심을 공유한 분들과 좋은 주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55차 UN 여성지위위원회에는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수석대표 기조연설 시, 백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여성정책 추진 방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였고, 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의 교육·훈련·과학기술에 대한 접근과 참여, 완전 고용과 양질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UN Women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출범을 축하하는 동시에 UN Women 창설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건설적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대 집행이사국으로서 UN Women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책적·재정적 기여 확대에는 우리정부가 2011년 약4.7백만불을 UN Women에 기여할 예정이라는 것과 UN Women의 향후 임무수행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적인 지지의사를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중 3백만불은 UN Women에 이미 기여한 바 있다.

사상 최대의 국제여성통합기구인 UN Women 출범은 여성 정책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성정책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여성 정책의 성과 공유, 여타 국가에 대한 정책 지원, 선진적 여성 정책 도입 및 협력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권위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여성정책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UN Women에 대한 재정 기여를 기존 UNIFEM 기여액에서 100배 이상 획기적으로 증액된 약 4.7백만불로 늘렸을 뿐 아니라, UN Women에 한국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UN Women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오늘 발제에서는 ‘UN Women을 통해, 또는 함께’ 우리나라와 한국 여성정책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며, UN Women의 비전과 향후 추진하는 과제들이 한국여성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이고 유용한 실천 방안이 많이 제안되었다. 특히, OECD/DAC 가입과 HLF-4 개최국이 된 한국의 위상과 정책 기조에 맞게 ODA와 여성정책, 그리고 UN Women과 ODA 연계의 중요성도 지적되었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의 중요성, 성인지 정책과 성인지 예산과 같은 양성평등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여성정책의 역할과 분쟁지역에서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우선순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천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DAW, OSAGI, UNIFEM, INSTRAW의 4개로 흩어져 있었던 여성관련 기구들이 UN Women이라는 강력한 기구로 통합된 것은 단순히 조직과 인력의 통합 이상의 의미이며,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이슈를 보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과 여성인권 향상 및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여성정책의 선도적 지위를 점하는 한국여성정책은 정책적, 기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여금 확충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재정적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unds & program과 인력 훈련, 정책 점검과 여성 리더 양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UN Women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UN Women의 비전과 정책적 우선 과제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기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책 분야에서든지 국제적 스탠더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 경쟁력이나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정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여성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정책적 발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가 여성정책분야의 발전적 국가를 넘어 선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정책분야에서 탁월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UN Women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분야에서의 국제적 스탠더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국내 상황에 걸맞게 이를 적용하며,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여성 정책을 선도해나가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 UN이 제정한 CEDAW, 북경여성행동강령, MDGs, UN결의문 1325와 한국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이연숙 (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선주 연구위원의 발표는 많은 자료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잘 정리한 논문입니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의 향후 과제를 국제협력분야에 초점을 두어 제안한 정책 제안은 즉각 실현되어야 마땅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한국여성은 언제나 힘이 없는, 1류가 아닌 2류 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국내에서 보다는 국제적인 유대를 통해서 힘을 키워 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UN의 도움을 크게 받은 나라이고 현재UN의 반기문 사무총장 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쪽 끝까지 밀려갔던 정부가 UN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힘입어 수복을 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오늘의 세계경제순위 10위권을 이룩한 UN 성공스토리의 주역입니다.

UN WOMEN 출범에 한국여성이 기대를 거는 것은 경제성장의 경우와 같이 한국여성의 권한척도가 세계최고의 위상으로 발전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선주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토론자는 참석하신 분들의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UN WOMEN이 수행해 나가야 할 UN결의문과, UN이 결정한 협약, UN이 추구하는 목표 사업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UN이 마련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반 결정에 저의 생각을 담아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소금을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 선배들께서 마련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뿌려서 간을 맞출 런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의 대 유권자 인심이 후해질 때를 잘 활용해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 여성

차별철폐협약과 새천년개발목표, 그리고 UN결의문 1325를 포함해서 10년간에 결정한 UN결의문을 모든 입후보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여성정책 공약을 많이 받아내고 당선자에게는 조직적으로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쓸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과 결의문, 특히 한국 정부가 시행을 약속한 여성정책 1, 2, 3차 기본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2013년부터 시행할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무엇을 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는 오늘의 여성정책포럼을 기해서 이제부터는 여성의 절반참여(50%) 를 여성 스스로가 주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사회전반에 여성참여가 극히 소수 였던 시대에 여성에게 10% 라도, 한껏 욕심을 내서 30% 정도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때는 그것도 감지덕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항상 패배하는, 그래서 언제나 결정권에 미달하는 여성 2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2류를 벗어나 1류로 갑시다. CEDAW를 활용한 르완다는 의회진출 56.8%를 이룩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생각을 대신하는 대표를 뽑아서 법을 만들고 예산과 결산을 수립 감독하는 의회에 보내서 나대신 내일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성유권자를 대표해서 50%의 여성이 각종의회에 진출해서 여성의 생각을 법으로 만들어 내 아이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 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중에서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과 공금의 낭비나 부패요인을 걷어내야 합니다. 의회에는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문가인 경우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보통주민의 의견을 입법하기 위해서 의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거방법을 바꿔서 여성이 여성을 뽑든지 지역구 두 개를 합쳐서 남 녀 1명씩 두 명의 의원을 뽑든지 해서, 여성이 정정당당하게 여성의 목소리를 내서, 여성이 원하는 세상 만들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30%참여는 이제 딱! 끝내고 여성을 대표하는 모든분야의 50% 보장을 법률로 만들어갑시다. 법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사회의 정의구현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리에 절반을 위한 여성이 참여해서 여성의 생각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이 노력해서 UN이 만든 법과 제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협약과 결의문, 그리고 실천 목표를 주제발표자의 논문 발췌를 포함하여 참고자료로 첨부하면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 UN WOMEN 창설과 우선주제

지난 2월 22일부터 UN본부가 있는 뉴욕에서는 UN 여성지위위원회가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16년을 돌아쳐보고 앞으로의 여성운동 활동을 논의하는 2주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UN에도 여성기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UN기구내에 여성문제를 다루어온 조직이 DAW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여성지위향상국), INSTRAW (Internation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여성연구훈련원), OSAGI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성평등을 위한 문제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실) 그리고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UN여성개발기금)등 4개가 있어 왔는데, 지난해까지 UN회원국들과 전문 인사들의 논의를 거쳐, 2006년부터 유엔 시스템내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유엔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UN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010년 7월에 이를 통합하여 UN WOMEN(유엔여성 또는 여성유엔)이라는 독립기구로 유엔총회에서 설립을 결정 한 것입니다.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 개편한 이 조직의 대표로는 칠레국의 대통령을 지낸 Michelle Bachelet 여사를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UN사무차장으로 임명하여 2월 24일 전 세계 여성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취임행사를 가졌습니다.

CSW의 회기 중에 UN WOMEN이 공식 출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 기구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이 기구의 중요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한것이기도 했습니다. UN WOMEN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UN기구로(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유엔총회(UN Assembly: UA) 결의안 A/RES/64/289(2010년 7월)과 A/RES/63/311(2009년 10월)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UN WOMEN의 다섯가지 우선주제는:

### 1) 여성의 발언권, 리더십과 참여의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참여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리더십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혜택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력

## 2)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회원국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를 늘리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책, 서비스체계를 구축토록 함. 이를 위하여 UNICEF, UNFPA(UN Population Fund), WHO와 협력할 것임

## 3) 여성의 평화와 안보 아젠다 이행 강화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전면적 참여, 성 인지적 조기경보,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유엔 결의안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게 함

## 4)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전 세계적인 경제와 환경의 위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의 필요성 대두, 여성의 경제적 안정과 참여에의 권리, 생산적 자산(asset) 확보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각국 정부 및 UNDP, ILO, World Bank, 기타 지역의 개발은행들과 협력제고

## 5) 국가, 지방, 분야별 계획, 예산, 통계에 양성평등을 우선적으로 반영

UN Country Team(UNCT)<sup>11</sup>)을 비롯한 기타 UN협력기관들과 함께 추진

UN WOMEN은 이 밖에도 HIV/AIDS, 이주, 법규, 환경악화와 기후변화, 사회보장, 임산부와 아동의 보건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UN WOMEN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UN 시스템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UN WOMEN은 앞으로 UN 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 UNDG)<sup>12</sup>)과 함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system-wide coordination 전략을 수립 할 것입니다. 이 전략의 수립은 기존 기구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과 우선권을 유지 하면서도 일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며 UN WOMEN이 UN의 다른 기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UN과 CEDAW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유지와 행복추구를 위하여, 국제연합은 1946년 제 1차 UN총회를 개최했는데 이 때 17명의 여성들이 여러 나라를 대표해 자진 참가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2월 12일 총회석상에서 미국의 엘리노아 루즈벨트 여사가 세계만방에 ‘여성도 UN에 참가해야한다’는 당위성을 호소하는 공개장을 낭독 했습니다. 총회의장은 이 건의를 받아드려 UN이 여성의 참가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17명의 초청도, 환영도 받지 못한 선배여성 지도자들이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UN을 설득했고 UN은 탄생과 더불어 여성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해 6월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인권위원회와 나란히 여성지위위원회(CSW)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지위현황은 전체 UN회원 51개국 중 20개국이 여성참정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의 UN활동은 차치하고, 자기 나라 안에서 주권자로서 남성과 평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제1차 UN총회는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UN은 제 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가결 선포했고 이 선언문은 전문에서, 국제문서로는 처음으로, 남녀의 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확인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신념을 현실화 하기위하여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법적권리를 정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 기준이 우선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참정권에 관한 조약」을 준비하여 1952년, 제 7차 총회에서 채택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결혼한 여성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을 1957년 제 11차 총회에서 채택 시켰고 여성의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위하여 「혼인의 동의, 혼인의 최저연령 및 혼인의 등록에 관한 조약」을 1962년 제 17차 총회에서 채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약을 제정한 후, 모든 여성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문서를 제정할 필요 때문에 여성지위 위원회는 1967년 제 22차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게 했습니다.

이 선언은 여성차별은 UN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명시한 인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위한 국제기준을 제시하

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협약이 아닌 선언의 형태로는 회원국에게 법적인 의무를 지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인습으로 굳어진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계도처에서 여권은 도외시되는 풍조가 이어졌습니다.

여성지위 위원회는 1972년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위하여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안을 회원국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1974년부터 기초하여 1976년에 완성하고 3년 동안 UN총회 제 3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주의)에서 논의를 해, 어렵사리 설득과 절충을 거쳐 1979년 제 34차 총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반대도 많았고 합의하기 힘든 조건도 많았지만 8년에 거친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에 탄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89번째로 1984년 5월 25일 에 조인하고 1984년 12월 27일 국회의 비준을 받아 1985년부터 시행 해 온지 26년이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8일에는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해서 2007년 1월18일에 발효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실현을 위하여 UN본부에 설치된 CEDAW 상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여 이화여대 김영정교수 와 성공회대학교 신혜수교수가 대표로 참석해왔습니다.

여성의 정치참가율의 기준이 되는 의회참가율 세계평균은 2011년 1월말 기준 19.2%, 아시아평균이 18.3%, 미국이 16.8%, 일본 11.3%, 중국과 북한이 21.3%와 15.6%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은 IPU 기록 상 14.7%(80위-동률포함 99위) 라는 세계와 아시아의 평균에 못 미치는 한심한 위상에 놓여 있습니다.

### **CEDAW 가 1979년에 채택되어 1981년 9월 발효된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

1983년 3월 14일 여성개발원 설립, 여성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1984년 12월 29일 CEDAW 가입, 1985년 1월 26일 발효, 유보조항 9조와 16조 4개 조항 유보, 2007년에 모두 해제

1988년 2월 25일 현재의 여성가족부 전신인 정무 제2장관실 설치, 여성장관 임명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공포, 1996년 7월 1일 시행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7월 첫 주를 여성주간으로 채택  
금년이 16회째

1997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확정

1998년 1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시행

2003년 1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시행

제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0년간의 성과

1)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가) 2002년 성별 영향평가제도 도입

나)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 인지 예산제도 도입,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함

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공적분야에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조치도입:

가) 1998-200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2003-200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한시적  
적용, 2003년, 국공립대학교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

나) 2002-2005, 정당법개정, 200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비례대  
표 후보자 중 50%이상 여성추천

3)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가)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문  
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 강화

나)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간접차별금지, 2005년, 사업주가 적극적 고  
용개선촉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  
를 개선함

4) 일-가족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확대:

가) 2001년, 노동 3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지  
급을 규정함. 2005년, 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유·사산 시 보호휴

가를 사용토록 함

- 나) 2004년, 영유아 보육법 전면개정과 보육정책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예산 대폭확대; 2002년 2,090억원 - 2007년 10,435억원
  - 2006년, 시설평가 인증제 도입,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5)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보호 기반 강화:

- 가) 2001년, 여성 긴급전화 1366번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 구축하고 폭력피해여성 ONE-STOP 지원센터 설치 운영(2007년 -14개소)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나)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2007년 92.2%가 불법성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2004년 1,679개소 - 2007년 992개소)함

6)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가)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과 2007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포용성 증대와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나)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구축
  - 2006년,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2007년 64개소)
- 다) 한 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과 서비스 확대

2008년 1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시행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1년, 올해가 제 4차년도로서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정립실현

## CEDAW는 전체 6부 30조로 된 국제협약으로서 전문에 이어

제1부가 총론으로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제2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공적생활에 관한 권리

제3부는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사회생활에 관한 권리

제4부는 제15조와 제16조에서 사적생활에 관한 권리가 규명되고

제5부는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부는 23조에서 30조 까지 최종 사항의 기술

특히 제5조의 남녀 역할에 바탕을 둔 편견, 습관, 관행 등의 철폐

제10조에 명기한 차별철폐는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가정과목이 여성만이 배워야 할 과목이 아니라 남녀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필수과목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과학, 기술, 공업, 수학 같은 과목이 어떤 특정한 성에게만 치우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16조에는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철폐를 강조 했는데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차별 없이 지켜지는 민주주의의 작은 실천으로 실현되는 인권존중 의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의 UN 여성지위위원회(CSW) NGO 여성회의 주제는 바로 이점을 부각시켜서 “Access to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 기술교육의 강화)로서 여학생에게 취약한 STEM과목 (과 기 공 수;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업 and Mathematics-수학)를 어떻게 남학생과 같은 조건에서 배우게 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부모나 가족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의 많은 토론과 전문가의 국가 정책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동안 우리정부가 여성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여성에게 실제적인 장벽이 그대로 놓여있고, 특히 교사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뿌리 깊은 성 차별적인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CEDAW 는 한국여성에게 여러 가지로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계기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 여성지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 정치참여:

\* CEDAW 내용을 정책결정 지도층 남성에게 주지시키고 여성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여 항상 마법의 지팡이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교

육 훈련의 강도를 제고

- \*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정과 개정, 정책개발 과정참여, 현실적인 집행과정 감시
- \* 여성이 소외된 현실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 50% 쿼터제 도입 연대운동 활성화
- \* 선거제도 개혁, 선거풍토개선, 혼탁선거 감시, 고발
- \* 여성의 세력화, 연대 기구 상시운영
- \* 지역협력으로 일본, 중국, 몽고와의 교류 증진, 공동사업 추진
- \* 여성운동의 확산과 대중화, 그리고 국제화
- \* 정치서비스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장 요구
- \* 사회전반의 부패구조를 없애는 사업전개
- \* 폭력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와 실천
- \* 여성을 교육 훈련하여 각급의회에 진출시키고 활동 내용 모니터와 자료제공

- 경제참여:

생산성 확대 - 여성 취업, 창업, 기술훈련, 교육 지원

합리적인 소비 - 환경보호와 연계해서

소비자보호- 소비상품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가격 구조 및 안전성 확보

세계개혁으로 여성의 불이익 배제

- 교육:

새로운 가치관형성과 우선순위 재편

양성평등사회형 교과내용 구성촉구

교육 정책수립, 고위행정 직위에 여성참여 실현

학부모 참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추진

사회변화, 생활변화의 방향, 삶의 질 향상 여건 등 여성대상 교육의 적극화

- 사회변화로 대두되는 여성 건강관리의 현대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평균수명연장과 질병 예방

“인간계놈” 개발과 줄기세포 개발로 이뤄지는 질병퇴치

인간복제와 도덕성의 문제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통

남성보다 8년 이상 길어진 여성수명과 2050년대에 당면할 평균수명 100세, 이상으로 늘

어나는 150세 200세 시대의 여성의 혼자살기와 생계 문제에 관한 대책

혼자 사는 극빈 여성노인의 질병 치료와 예방대책

- 복지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전문직 창출을 위해 육아, 노인 간병 등의 사회부담 확산  
소외계층, 요 보호계층, 청소년 보호 등 자원봉사의 효율화
  
- 환경보전과 개선:  
여성의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보전 그리고 개발정책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현상 홍보, 대안제시, 행동촉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 창출과 교육  
생활의 과학화  
화학연료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현실인식, 예방조치 교육의 일상화
  
- 전통보전과 문화발전:  
사라져 가는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 유지  
여성이 유지해온 민예품, 전통공예품 기술전달  
한국 문화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활동  
한국적인 의, 식, 주 연구와 이들의 국제 상품화로 세계진출 - 건축, 식품, 패션, 다도,  
예절, 민속치료법-침 뜸, 등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추진:  
안전문화의 생활화  
새로운 생활문화 정착  
지역사회 복지 편의 시설 확충 등
  
- 평화문화의 정착: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00년 10월 31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  
한 결의안 1325(2000)” 18개 조항의 실천 촉구  
갈등비용- 전쟁, 파괴, 살상 등의 고비용 회피  
통일실현의 구체화 와 준비  
갈등구조 완화 - 대화, 토론, 타협의 일상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 국제사회진출:  
세계적인 지도력 확산 - 언어, 태도, 자세, 지식, 판단력 등 훈련  
국제기구 및 단체 활동 적극참여 - 국제 연계사업 추진

국제조직 핵심 지도력으로 참여, 동북아시아 연대와 지역화, 한일 간 여성 지도자 협력과 연대 구축

- 가정 재편성:  
가족역할 재조정  
가정생활의 재편성
  
- 정보지식기반사회 중심권 형성:  
일상생활에 현대적 정보 통신매체 활용과 문제점 해결능력 훈련
  
- 언론홍보 제도권 내에 기반형성:  
홍보매체 제작 및 활용  
언론 모니터링, 강력한 시정권고
  
- 사회 전반적인 운용 모니터링:  
적극적인 감시, 고발 개선활동  
정부 내 외의 각급, 각종정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점검  
언론의 여성차별, 여성소외 지적과 대안제시  
선거풍토 개혁으로 여성의 정치권 진입을 유도하는 활동
  
- 여아 (Girl Child) 에 대한 전반적인 배려:  
인권에 근거한 여성권리 실현교육, 다양한 사회참여준비 등  
10대의 건강권 증진, 건강점검 및 향상을 위한 조치, 특히 과외공부와 운동 부족, 부적절한 식사와 영양불균형, 비만 회피를 위한 극도의 식이요법 등

정보지식기반사회의 중요한 기술, 세계최첨단 통신국가의 핵심인 한국은 여성두뇌와 인력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고 남성중심의 기존조직의 틀을 유비쿼터스(UBQUITOUS) 시대에 걸 맞는 구조로 신속하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힘 것, 활용 해 나가야 합니다.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년 9월 새천년을 마지 하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8가지를 선정하여 2015년 까지 해결하기로 결의하고 발표 했습니다.

- MDG 8가지 목표는
1.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퇴치
  2.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3. 남녀평등 및 여성권의 신장
  4. 유아 사망률 감소
  5. 산모 건강 향상
  6.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퇴치, 에이즈 근절
  7.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8.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동반자 관계구축

등 인데 지난 2010년 9월 20일 뉴욕에서 140여 개국 MDG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점검한 결과 앞으로 4년남짓 남은 기한 안에 목표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번, 5번, 7번과 8번에 특별한 관심을 모아 정부도 지도자들도 많은 열의를 가지고 힘을 기우려야 할 때입니다.

###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UN결의안:

**1325, 1820, 1888, 1889, 1960**

UN은 2010년 10월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2000) 채택 1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무력충돌, 분쟁과 갈등은 남성이 결정하고 그 피해는 여성과 자녀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미치는 현상과 무력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 및 강간이 만연해지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력분쟁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 를 2000년에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년간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결의안 들이 2008년에 1820, 1888, 이어서 2009년에 1889, 2010년에는 1960이 채택되었습니다.

분쟁지역 또는 취약국가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분쟁지역에서는 오랜 갈등과 내전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개발도상국 여성과 여아의 상황보다 취약합니다.

2000년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만든 결의안 1325의 내용은: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도모
-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여아의 보호
- 여성의 권리증진과 실제적 법 적용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 평화유지활동의 성 주류화

2008년의 결의안 1820:

- 민간인에게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성폭력을 사용 중지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면죄 허용금지  
민간인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
- UN과 평화유지활동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제고

2009년의 결의안 1888:

- 유엔사무총장 특별대리인 임명, 분쟁지역의 성폭력 문제 유엔 차원에서 조정
- 분쟁지역에 성폭력 전문가를 파견
- 성폭력 이슈를 평화협상과정에 포함
- 분쟁의 성격과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실시

2009년도 결의안 1889:

-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 1325의 이행상황을 측정해서 지표 제출
- 분쟁지역과 분쟁이 종결된 지역 여성과 여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대응 방안 강화

2010년 결의안 1960:

- 유엔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와 관련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책임자의 명단작성
- 유엔사무총장 특별대리인은 관련제재위원회(sanction committee)에 보고하고 위반자 명단에 포함된 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행사
- 분쟁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보고, 분석, 보고체계 수립

## ‘UN Women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미래’ 포럼 패널토의 의견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 □ 주제발표에 대한 여성과학기술관련 의견

- 교육을 통한 제도적 차별을 제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여성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입에는 아직 많은 장애요소가 존재함.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제기되는 이슈에 차이가 크나 수요와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여성의 과학기술로의 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각국은 여성들의 과학기술계에서의 역량강화와 참여 확대를 필요로 함. 특히 미래 과학기술 발전방향은 여성의 공감 DNA를 필요로 하는 분산정보기술과 분산에너지 기술이 중시됨.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역할모델의 발굴 및 제시 등 다양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 □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 한국정부는 10년 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해 왔음. 특히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채용목표제 등 적극적 조치로 여성과학자들의 활용에 기여한 바가 큼. 또한 동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 지원할 수 있게 한 제도와 정책은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2009년 여성과학기술인력 경제활동 인구는 817,113명으로 전체 과학기술인력 경제활동 인구(4,053,019)의 20.2%를 차지함. 이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해인 2002년에 비하여 100% 증가한 결과임.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과학기술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이 61.6%로 남성 91.1%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음. 이러한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율이 제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이어 OECD국가 중 최하위임. 특히 교수 등 고등교육기관과 NPO에서의 활용율이 현저히 낮음. 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을 특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역할모델 발굴과 공학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여성교수와 여성엔지니어의 육성은 필요함. 특히 2009년도 공학계열의 여교수 비율은 4.9%로 정부출연연구소에 이어 대학에도 이공계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이 시급함.

####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 2010년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운영은 법적보장제도의 경우 87%이상의 기관이 참여했으나 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 탄력근무제 도입 등 자율제도 운영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함.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서 일·가정양립지원 자율제도 운영율을 2년 안에 3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생애주기에 따른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체재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 정책지원과 예산지원이 필요함.
  - 수요지향인재의 일자리 발굴 및 교육 훈련사업과 고급핵심인재지원을 위한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리더너를 위한 재교육 및 훈련
  - 은퇴과학자를 위한 사회적 역할 발굴 및 지원 시스템

#### □ 국제사회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할

- 한국의 교육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벤치마킹하고자하는 개도국이 다수임.

이들 국가를 위한 교육 및 기술 분야의 실질적 지원에 여성과학자와 이공계 대학생들을 활용한 사업개발 및 지원방안을 ODA와 관련 모색함이 바람직함.

-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자연친화적인 공감 DNA를 활용한 삶과 직결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참여 추진.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정책 개발과 연구 필요해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기간 중 하루는 CSW와 IPU가 주관하는 의원회의가 열린다.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니 금년이 7번째다. 23일에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의원회의에서도 미셸 바첼레트 유엔 위민 총재가 5대 역점 과제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 5대 중점 과제로 거론된 것은 발표자가 정리한 대로 여성의 리더쉽/참여, 폭력철폐, 경제역량강화, 국가정책/예산 등에 성평등 그리고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이행 강화다. 이 5가지 중점과제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핵심과제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정책과 연구 모두 미진한 것이 바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것이다.
- 그런데 발표자는 이 과제를 보편적 과제가 아닌 특수한 과제, 즉 분쟁지역의 재건차원에서 저개발국만의 문제로 보아, OECD의 개발원조의 문제에 국한하여서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제는 멀리 아프가니스탄이나 콩고 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이 반드시 협력해야만 풀 수 있는 보편적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그 이후 유엔과 세계의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발표자가 잘 정리하여 주었듯이 유엔 안보리는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결의 1325호를 2000년에 채택하였으며 이후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 결의 1820호(2008년), 1888호와 1889호(2009년), 그리고 1960호(2010년)를 진행했다.

또 유엔 차원에서는 2004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은 1325의 이행을 위한 유엔행동계획을 작성하여 2년마다 보고하고 있으며,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5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등 24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한 상태다. 현재 미국도 국가행동계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힐러리 국무장관의 지휘아래 거의 초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점점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된 상태라고 한다.

- 우리나라가 2000년 1325호 관심국(Friends of 1325)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또 한반도의 평화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성평등 그 모든 것의 전제임에도 젠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분야의 연구과제는 적지 않다.

먼저, 그 동안 놓치고 있었던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 1325호와 후속 결의에 대한 분석, 결의 이후 형성된 국제 논의와 정책, 프로그램들, 현재 24개국의 국가행동계획과 이행 상황들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우리의 과제를 파악하고 연구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안보관련 회의와 조직에 여성들은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6자 회담 관련하여 여성 참여는 어떤 상태였는지, 앞으로 재개된다면 여성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유엔 평화유지군은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을 받고 나가며 현지에서 지역주민에게 성 인지적 관점의 인간안보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국방, 외교, 통일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남북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 등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과 여아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 점검해 보아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셋째,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우리도 국가행동계획의 시안을 만들어 채택할 수 있도록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위한 의원의 역할

최영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sup>1)</sup>

## 인사

존경하는 사회자 린다 야르 조지워싱턴대 PISA소장님,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정현백 위원장님, 피스보트 미국 소장인 코라 와이스씨께 이 행사 개최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네덜란드 헤르만 샤페르 대사님, 수잔 브래든 미국무부 세계여성이슈 선임정책자문관님, 피스빌더의 마빅 카브레라-발레자님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엔 위민(UN Women)이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맞이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라는 주제로 오늘 워크숍을 공동주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UN Women의 출범은 유엔 회원국가들의 지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헌신한 결과입니다. 그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UN Women의 집행이사국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의 관심국(Friends of 1325)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분단국의 여성 의원으로서 분쟁이 초래하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를 보아 왔기 때문에 평화의 중요성을 항상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국제 워크숍, 2011. 2.24. 유엔한국대표부 2층, 뉴욕,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동북아여성평화회의, Peaceboat, 미 조지 워싱턴대 피사센터 공동주최

## 평화는 발전과 평등의 전제조건

작년 한반도는 불안과 긴장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였고, 60여년전 한국전쟁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지난 60년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역량, 여성들의 권리 의식,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진전, 이 모든 귀중한 과정들이 다시 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사이에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와 신뢰를 빨리 회복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대립과 민간인 사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평화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등의 진전 또한 평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화 관련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세계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복지의 자원을 만드는 평화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는 단지 비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를 확대하게 해줍니다.

국방을 중심으로 하는 협소한 안보개념으로는 폭력과 방어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이 악순환을 넘어 모두가 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자원을 확보해줍니다.

세계 각국에서 ‘군사력 증강’과 ‘신무기 도입’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동북아지역의 군비지출은 55%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평화의 공감대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만큼 이 자원들을 빈곤 해결과 생태 보호,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교육 기회 확대와 의료 제공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평화만이, 분쟁과 갈등이 초래한 폭력과 저발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이들을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평화협상에 적극적 참여 필요

분쟁 상황에서 강간과 성폭력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상황과 군

사문화는 성매매와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와 아주 긴밀한 국방, 외교, 통일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남북 회담과 6자회담 등 공식적인 평화협상과 관련하여 여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식적인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일은 아직까지 큰 도전입니다.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절박할수록 여성들이 나서야 합니다. 평화과정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분쟁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분쟁의 예방하며, 분쟁이후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의 경험에서 우리는 여성들의 창의적인 실험을 보았습니다. 북아일랜드평화협정(Good Friday Agreement)이 합의되기 전 여성들은 종교, 정치,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북아일랜드여성연합을 조직하였고, 여성들이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협상의 주체로서 평화협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북아일랜드여성연합의 경험은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도전정신, 포용성, 그리고 평등정신의 실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1325호 이행과 의회의 역할

본 의원은 2008년 9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일부분으로 조직한 ‘한일여성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후원하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워크숍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1325호의 이행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을 위해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에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결의 1325호는 여성들의 경험과 장점을 갈등해결과 예방, 평화형성과정에 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325호 이행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여성의 전략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1325호를 이행하고 한국정부가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의회에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1) 1325호 홍보와 인식의 확대와 네트워크 추진

한국사회에서 아직 1325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1325호의 의미와 국제적인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전문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의원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1325호를 지지하는 의원, 학

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국가행동계획 작성 촉구

한국 NGO들의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1월 힐러리 미 국무장관의 1325 국가행동계획 추진 선언문을 제게로 보내 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국가행동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1325호 관심국(Friends of 1325)으로서 1325호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성 주류화 정책 촉구

1325호 이행과 관련하여 국방, 외교, 통일 분야에 성 주류화 정책을 개발, 확산하고 특히 남북협력기금이나 공적해외원조 등을 통해 1325호의 정신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활동을 촉구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4)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활동 촉구

여성가족부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실현을 위해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따라서 평화, 안보, 통일 주제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가 여성·평화·안보 관련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하도록 견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 결 어

1325호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정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이 정치적 의지가 유엔,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1325호 이행을 돕고 각국 정부가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여성, 평화, 안보 분야에서 의회, 정책결정자,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야말로 1325호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워크숍이 1325호 이행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위한 공동의 비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N Women 출범과 외교부의 역할

황현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2등서기관)

### 1. UN Women 출범과정과 외교부

- 2010.7.2. UN 총회는 UN내 여성 4개 기관(UNIFEM, DAW, OSAGI, INSTRAW)을 통합하고 여성 관련 기능을 강화한 유엔 여성(UN Women) 창설과 동 기구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설립을 결정(결의 64/289)
- 외교통상부는 동 기구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여타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조정 활동을 적극 전개
- 2010.11.10(수)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 Women 초대 집행이사국 선거가 실시된 바, 우리 정부는 2011-13년 임기 이사국으로 당선

### 2. UN Women 주요 관심사안별 입장

#### □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UN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 여성, 평화와 안보

- 우리 정부는 2000년 이래 안보리 결의 1325호 및 그 후속 결의인 1820, 1888, 1889, 1960호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1325 관심국 그룹(Friends of women, peace and security)의 일원으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우리부는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1325호 및 후속결의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국내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중

#### □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확대

- 여성 외교관 비율은 외교부의 전체 인력 중 약 25%를 차지하며, 특히 최근에는 신규로 충원되는 외교관(약 35-40명) 중 여성외교관이 연평균 약 50%에 이르는 상황
- 외교부는 ▲ 육아휴직 이용 장려 ▲ 「대체인력뱅크(Alternative Personnel Bank)」 제도 추진 등 일과 가정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중

#### 〈외무고등고시 여성합격 추이〉

연도	여성합격자	총 합격자	여성비율
2000	6	30	20.0%
2001	11	30	36.7%
2002	16	35	45.7%
2003	10	28	35.7%
2004	7	20	35.0%
2005	10	19	52.6%
2006	9	25	36.0%
2007	21	31	67.7%
2008	23	35	65.7%
2009	20	41	48.8%
2010	21	35	60.0%

####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개발협력정책 관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명시
  - ‘성평등(gender)’을 범분야(cross-cutting) 의제로 고려, 무상원조(KOICA) 사업의 성주류화 추진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UNIFEM(UN Women)의 아프리카(라이베리아, 르완다) 여성 경제역량 배양사업에 2009~2011년간 45만불 지원

- 사업대상국 정부의 여성역량 강화 전략 및 제도 마련 독려
- 취약계층인 농촌 여성의 경제적 생산력 및 소득수준 향상 도모

**□ 국가 계획 및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

○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예산, 이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주류화 노력

- KOICA내 성인지담당관 임명 (성주류화 전략 개발 및 KOICA 프로젝트에 대한 성별 분류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수행)
- KOIC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 이행을 일환으로 ‘성평등 증진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 제정

○ 대외공적원조(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별 분석 도구 적극 활용

- ODA사업에 성인지 예산제 도입, 시행 중
- 성인지적 대외무상원조 실적 통계 DB 구축 및 추후 사업시 반영
  - 성평등 달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젠더마커(gender policy marker) 도입
  - ODA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통계DB 확대

**〈한국국제교류협력단(KOICA)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증감(%)*
성인지 예산	32,914	37,560	39,680	2,120 (5.6)

- \*는 2010년도 예산 대비 2011년도 예산의 증감

**□ 여성과 개발(MDGs)**

○ MDG 3(양성 평등과 여성권한 확대 촉진) 관련, 우리나라-수원 개도국간 양자 성평등 프로젝트 및 연수생초청사업 확대 추진

- 국별연수과정 및 장기(석사)학위과정에서 ‘여성’연수생 비율을 30%로 확대

※ 2011년 연수생초청사업 계획: ①장기학위연수- 국제학(여성과 개발), ② 페루 모자 보건 정책 및 제도, ③파키스탄 여성정책, ④파키스탄 지역여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⑤성평등 정책역량강화(KOICA-UNDP 아프가니스탄 공동연수), ⑥성평등정책 및 여성 지도자 양성((KOICA-UNDP 아프가니스탄 공동연수) ⑦아프리카 여성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 향상(아프리카 특별연수), ⑧여성인권 증진, ⑨농촌여성 경제력 향상, ⑩여성 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 향상 등

○ MDG 5(모성 보건 증진) 관련, 양자 모성보건 사업 및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운용, 보건 관련 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 2011년 양자 프로젝트 계획: ① 캄보디아 바티에이지역 모자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바티에이 병원 역량강화사업 (2011-2014/350만불), ② 에티오피아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2차사업(2011-2013/200만불), ③ 도미니카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2차사업(2008-2011/130만불), ④ 과테말라 모자보건 향상 사업(2010-2012/150만불) 등

※ 혁신적 개발재원 사업

- 2007.9월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 도입,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천원을 징수하여 조성된 재원을 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질병퇴치에 지원

※ 보건 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 2008~12년간 UNITAID에 연 700만불 기여

- 2010~12년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에 100만불 기여

-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4~10년간 글로벌 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총 1,300만불 기여

- KOICA 및 우리 NGO를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 지원

### 3. 향후 과제

#### □ 집행이사국 활동 강화

○ 여성 정책 관련 아시아 지역내 선도적 지위를 감안, 재정 지원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주도적인 집행이사국 활동 전개

#### □ 한-UN Women 양자 협력 증진

○ 우리의 양성평등·여성권한 증진 경험과 UN Women의 사업 방향간 Synergy 효과 모색



# MEMO

---





